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# 포항시보

제 825호 2011. 4. 12(화)

## ◀ 입법예고 ▶

- 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제2011-371호) ..... 2
-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제2011-370호) ..... 8

## ◀ 고 시 ▶

-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제2011-28호) ..... 32

## ◀ 공 고 ▶

- 공 시 송 달 공 고(제2011-365호) ..... 33
-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(제2011-369호)..... 34
- 도로지정 공고(제2011-150호) ..... 35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입법예고**

포항시 공고 제2011 - 371호

포항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1년 4월 일

**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,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**2. 주요내용**

가.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1) 대상자: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자

2) 공제액

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: 고지서 1장당 150원

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: 고지서 1장당 300원

3) 공제순위: 1장의 고지서에

- 도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 도세 우선 공제
-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 부가세목 우선공제

※ 2010년 : 25,312건(자동이체 25,196건, 전자송달 133건)

나.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
-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

다.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

- 법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

※ 법 제13조제5항: 별장, 골프장,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 중과세 대상

3. 관련법령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「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」 제2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,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: 2011년 4월 12일 ~ 2011년 5월 2일(20일간)

6. 의견제출

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 재정관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라.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포항시청 재정관리과(포항시 남구 시청로 1)
- 전화 054)270-2486, 팩스 054)270-2490, 이메일 park4526@korea.kr)

7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pohang.org>) “입법예고”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「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」 제22조의2제1항의 각호와 같다.

② 제1항의 세액공제 순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.

- 1.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「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」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
- 2. 1장의 고지서에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세액을 우선 공제한다.

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 를 “경제진흥원” 으로 한다.

제18조 본문 중 “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3항” 을 “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제3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

현 행	개 정
<p>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----- 「지방세법」 제13조 제5항----- -----.</p>

포항시 공고 제2011 - 370 호

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1년 4월 일

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'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·개선한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('10.12. 환경부)에 따라,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물여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, 조례상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대행계약 시 마다 민원발생이 우려됨.
- 종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및 봉투제작 시안, 종량제봉투 무상지급,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지급방법 및 폐목 재활용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 있음.
-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시 감량화와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 및 매립장 반입 생활 폐기물 중 폐가구류 등을 고품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하여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조정 (안 제9조)
  - 별표 6 범위 안에 → 제9조제2항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수수료지급



- 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부합되지 않는 조문 개정 (안 제13조, 제14조)
  - 종량제봉투 종류 중 음식물전용봉투와 용량 중 3리터를 삭제하고, 6종을 5종으로 개정
  -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삽입 (안 별표 6)
  - 종량제봉투 제작 시 봉투 전면에 감량화 홍보 문구와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 및 종량제봉투의 형태·재질·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제작 하도록 명문화
-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대상자 및 공급량 명문화 (안 제24조)
  - 추가지정 : 10세 미만의 자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  - 무료로 공급 할 경우 매월 1명당 40리터에서 →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 포함 4명까지 지급할 수 있다
- 상위 법규의 인용조문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 개정

3. 관련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- 2010. 12 환경부

4. 개정조례 (안) : 붙임

5. 입법예고 : 2011년 4월 12일 ~ 2011년 5월 2일(20일간)

6. 의견제출

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청소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- 라.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포항시청 청소과(포항시 남구 시청로 1)
  - 전화 054)270-3192 팩스 054)270-3160
  - 이메일 euiyong5802@korea.kr

7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pohang.org>) “입법예고”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**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포항시”를 “포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시장”을 “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“법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“규칙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월”을 “1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타 쓰레기봉투”를 “그 밖의 종량제봉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영 제7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

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3장 제목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종량제봉투” 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중 “쓰레기봉투의 종류 등” 을 “종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, 공공용봉투,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.
- ②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,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리터” 를 “종량제봉투의 용량은” 으로 하고, “6종” 을 “5종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종량제봉투의 형태, 재질,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(반투명) 또는 엷은 녹색(일반용 봉투 중 10리터, 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)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종량제봉투” 로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종량제봉투” 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종량제봉투” 로 “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, 경영수의 사업에 따른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” 를 “고유번호,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고,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14조제4항과 제5항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종량제봉투” 로 한다.

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.

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3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1.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,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, 20리터, 50리터 용량 3종에 한한다.
  2.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 하여야 한다.
  3.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·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.
  4.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「포항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거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·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.

제15조 제목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1호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와 제4호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쓰레기봉투”를 “종량제봉투”로, “일반용봉투(음식물전용봉투를 포함한다)”를

“일반용봉투” 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중량제봉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·징수한다. 단,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당일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“제4호” 를 “제5호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10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
제24조제2항 중 “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” 를 “1인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25조 제목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중량제봉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쓰레기봉투” 를 “중량제봉투” 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하며 “6월” 을 “6개월” 로 한다.

별표 4,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4】〈개정 2009.12.15〉

##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1. 종이류	- 신문지	- 물기에 젖지 않게 함 - 반듯하게 편 후 차곡차곡 쌓아 끈으로 묶어 배출 -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
	- 책자, 노트, 종이쇼핑백, 달력, 포장지	- 비닐코팅표지, 공책,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
	- 종이컵, 종이팩	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	- 상자류 (과자포장상자, 골판지상자 등)	- 비닐코팅 부분 제거 - 상자에 붙은 테이프, 철판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
2. 캔 류	- 철캔, 알루미늄캔 (음·식용류)	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-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
	- 기타 캔 (부탄가스, 에어졸, 살충제 용기)	-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3. 병 류	- 음료수병, 주류병, 기타 병	-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-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※ 빈병보증금제도에 의거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
	〈삭제〉	〈삭제〉
4. 고철류	- 고철(공기구, 철사, 못, 철판 등 쇠붙이)	- 목재, 플라스틱,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	- 비철금속 (양은, 스텐류, 전선, 알루미늄샷시류)	- 목재, 플라스틱,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	- 페인트통	- 물에 씻어 페인트 제거 후 배출
5. 플라스틱류	- PET (음료수, 간장, 술병)	-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	- HDPE(물통, 삼푸, 세제용기) - LDPE(우유병, 막걸리병) - PP(상자류, 쓰레기통) - PS (요구르트병)	- 내용물을 비우고,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- 〈삭제〉
	- 합성수지용기류 - 플라스틱 받침접시 ※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	-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
6. 스티로폼	- 가전제품 포장용	-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
	- 농수산물 상자	- 이물질이나 물기제거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	- 컵라면용기	-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(이물질이 묻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) 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7. 필름포장재	- 1회용 비닐봉투	- <삭제> -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제외(세척 후 물기 제거 시 가능)
	- 라면, 빵, 과자봉지, 한약봉지, 세제류포장재	-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
8. 의류	- 옷 (면섬유류, 기타 의류)	-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 (젖은 옷은 말린 후 배출) - 한복, 담요, 베게, 카펫, 나일론 제외
9. 영농폐기물	- 페비닐 - 농약유리병 - 농약플라스틱병 - 농약봉지	-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집하장에 배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거요청
10. 폐형광등	- 직관형램프 - 원형램프 - 안전기내장형램프 - 콤팩트형램프	- 외피,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공동주택, 관공서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- 대형건물, 다량배출업소(간판, 조명업체 등)는 자가처리
11. 폐건전지	- 알카리망간전지 - 망간전지 - 수은전지, 산화은전지 등	- 공동주택, 관공서, 학교,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
12. 생활계 폐목재	- 폐가구류 - 목재포장재 등	- 대형폐기물,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하여 배출

[별표 6]

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(제14조제6항 관련)

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.

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.

시 - 마크

재사용종량제봉투(20리터)

종량제봉투( 리터)

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  
시면 됩니다

- ( ) 용 -  
( 지역용)

재사용종량제 봉투 마크

※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 
관한 홍보문안 게재하고, 뒷면에는 상업  
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

시-마크 /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

포 항 시 장

※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 
관한 홍보문안 게재하고, 뒷면에는  
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

문의사항

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

포 항 시 장

제작업체 고유번호  
또는 품질인증표시

제작업체 고유번호  
또는 품질인증표시

1. 봉투용량 표시는 종량제봉투 5리터, 10리터, 20리터, 50리터, 100리터로 각각 표시 한다.
2.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표시한다.
3. 일반용봉투는 동지역용과 읍면지역용으로 각각 표시한다.
4. 봉투 묶는 부분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



**【별지 제14호 서식】**

**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**

신청인	성 명		광고주와의 관계		
	주 소		직책 또는 직위		
	생 년 월 일		연 락 처		
광고사업장	회 사 명				
	대표자(광고주)				
	소 재 지		연 락 처		
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		용량	10ℓ	20ℓ	50ℓ
		수량	매	매	매
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					
※ 별지작성 가능					
<p>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성명            인 또는 서명</p> <p>포항시장 귀하</p>				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대형폐기물”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, 가전 제품류, 냉·난방기류,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(이하 “쓰레기봉투”라 한다)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.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시가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(이하 “시 처리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. 다만, 시장이 별 제14조 및 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----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종량제봉투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포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</p>

현행	개정
<p>칙 제15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한다)---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-----</p>
<p>제4조(청결유지 조치) ① 시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</p>	<p>제4조(청결유지 조치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1개월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6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, 깨진 유리 등 청소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한다. 다만, 재활용가능폐기물, 대형폐기물, 제22조제1항제1호의 연탄재는 제외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대형폐기물, 기타 쓰레기봉투에</p>	<p>제6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--</p> <p>-----</p> <p>-----종량제봉투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종량제봉투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그 밖의 종량제봉투</p>

현 행	개 정
<p>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,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⑥ ~ ⑦ (생 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----- ----- <u>종량제봉투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)</b></p> <p>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<u>영 제7조</u>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·운반·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<b>제8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)</b></p> <p>① ----- ----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7조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(생 략)</b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</u></p> <p>③ <u>대행수수료는 별표 6의 범위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<b>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
<p>〈신설〉</p> <p>제11조(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·관리) 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설치된 보관 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<u>기타</u>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.</p> <p>② 공원, 유원지,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<u>당해</u> 관리주체가,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쓰레기봉투</u></p> <p>제13조(<u>쓰레기봉투의 종류 등</u>) ① <u>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(매립용, 소각용), 음식물전용봉투, 공공용봉투 및</u></p>	<p>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중량제봉투</u></p> <p>제13조(<u>중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등</u>) ① <u>중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, 공공용봉투,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
<p>가로청소용마대로 구분한다.</p> <p>②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 폐기물 을, 소각용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 을,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 을, 공공용봉투 및 가로청소용마대 에는 도로변, 가로, 골목길 기타 배 출자 불명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 다. 다만, 음식물류폐기물의 비분리 수거지역 및 소각시설 설치 전까지 는 폐기물의 성상에 구분 없이 일반 용 봉투에 담을 수 있다.</p> <p>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리터, 5리 터, 10리터, 20리터, 50리터, 100리 터의 6종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14조(쓰레기봉투의 제작 등) ① 쓰레 기봉투의 용도별 구분제작 등에 관 한 사항은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 계획 및 시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 에서 정한 <u>쓰레기봉투의 용도와 달</u></p>	<p>②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을,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재사 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----- ----- -----5종-----</p> <p>④ 종량제봉투의 형태, 재질,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 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(반투 명) 또는 옅은 녹색(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 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) 공공 용 봉투의 색상은 옅은 청색으로 한 다.</p> <p>제14조(종량제봉투의 제작 등) ① 종량 제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</p>



현 행	개 정
<p>제15조(쓰레기봉투·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)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·스티커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(이하 :판매소 “라 한다)에 대한 공급업무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, 20리터, 50리터 용량 3종에 한한다.</p> <p>2.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3.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·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 시기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.</p> <p>4.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「포항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거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·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종량제봉투·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) ① ----- 종량제봉투----- -----종량제봉투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 행	개 정
<p>제16조(판매소의 지정 등) ① <u>쓰레기봉투</u>의 판매업(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, 영업장소의 이전, 대표자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6조(판매소의 지정 등) ① 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판매소의 준수사항) ① 판매소는 <u>쓰레기봉투</u>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쓰레기봉투</u>의 현금 교환</p> <p>5. <u>기타</u> 행정지시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(판매소의 준수사항) ①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종량제봉투</u>----- 5. <u>그 밖의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판매소의 지정해소) (생략)</p> <p>1. 정당한 사유없이 30이상 계속하여 <u>쓰레기봉투</u>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18조(판매소의 지정해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공공장소에 관한 적용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, <u>당해</u>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<u>쓰레기봉투</u>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공공장소에 관한 적용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
<p>1.~ 2. (생 략)</p> <p>3. <u>기타</u> 등산로,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</p> <p><b>제22조(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부과·징수) ① (생 략)</b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·징수는 <u>쓰레기봉투</u>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3의2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<u>쓰레기봉투</u>의 판매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<u>쓰레기봉투</u>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. 이 경우 별표 2의 <u>쓰레기봉투</u> 가격산정 방법에 따라 <u>일반용봉투(음식물전용봉투를 포함한다)</u>의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인의 판매이윤을 포함하여 결정한다.</p> <p><b>제23조(수수료의 징수방법) ①</b> 시장은 판매소에 <u>쓰레기봉투</u>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사업장폐기물</u> 및 <u>공사장폐기물</u>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</p>	<p>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<b>제22조(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부과·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</p> <p>② 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-----<u>일반용봉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<b>제23조(수수료의 징수방법) ①</b> 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</p> <p>② <u>사업장폐기물</u> 및 <u>공사장폐기물</u>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</p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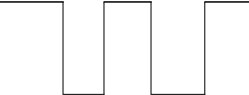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
<p><u>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제24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<u>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5조(<u>쓰레기봉투</u>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) ① <u>쓰레기봉투</u>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한 자가 이사 등으로 <u>쓰레기봉투</u>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반환하여야 하며,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</p>	<p><u>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·징수한다.</u> <u>단,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당일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4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10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</u>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1명당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 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<u>종량제봉투</u>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) ① 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-----<u>종량제봉투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의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			
<p>무 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33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 62조제2항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 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, 사업의 변경 등 기타의 사유 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</p> <p>【별표 4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1. ~ 11. (생 략) 〈<u>신 설</u>〉</p>	<p>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<u>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<u>6개월</u>----- -----</p> <p>【별표 4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49 1233 1220 1441"> <tr> <td data-bbox="749 1233 792 1441">12 생 활 계 폐 물 재</td> <td data-bbox="792 1233 935 1441">- 폐가구류 - 목재포장재 등</td> <td data-bbox="935 1233 1220 1441">- 대형폐기물,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판 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 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 착하여 배출</td> </tr> </table>	12 생 활 계 폐 물 재	- 폐가구류 - 목재포장재 등	- 대형폐기물,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판 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 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 착하여 배출
12 생 활 계 폐 물 재	- 폐가구류 - 목재포장재 등	- 대형폐기물,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판 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 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 착하여 배출		

**【별표 6】**

현 행			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동주택</th> <th>지급 기준</th> <th>수수료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일·대송권역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2,542원</td> <td>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</td> </tr> <tr> <td>오천·동해권역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2,666원</td> <td>〃</td> </tr> <tr> <td>흥해·청하권역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3,328원</td> <td>〃</td> </tr> <tr> <td>남구동권역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2,638원</td> <td>〃</td> </tr> <tr> <td>북구동A권역 (양학, 죽도2, 용흥)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2,710원</td> <td>〃</td> </tr> <tr> <td>북구동B권역 (중앙, 학산, 죽도1, 우창)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2,765원</td> <td>〃</td> </tr> <tr> <td>북구동C권역 (두호, 장량, 환여)</td> <td>세대당</td> <td>월 2,848원</td> <td>〃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공동주택	지급 기준	수수료	비 고	연일·대송권역	세대당	월 2,542원	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	오천·동해권역	세대당	월 2,666원	〃	흥해·청하권역	세대당	월 3,328원	〃	남구동권역	세대당	월 2,638원	〃	북구동A권역 (양학, 죽도2, 용흥)	세대당	월 2,710원	〃	북구동B권역 (중앙, 학산, 죽도1, 우창)	세대당	월 2,765원	〃	북구동C권역 (두호, 장량, 환여)	세대당	월 2,848원	〃	<p>〈삭 제〉</p>
공동주택	지급 기준	수수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일·대송권역	세대당	월 2,542원	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천·동해권역	세대당	월 2,666원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흥해·청하권역	세대당	월 3,328원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구동권역	세대당	월 2,638원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구동A권역 (양학, 죽도2, 용흥)	세대당	월 2,710원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구동B권역 (중앙, 학산, 죽도1, 우창)	세대당	월 2,765원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구동C권역 (두호, 장량, 환여)	세대당	월 2,848원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【별표 6】

현 행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중량제봉투의 제작사양(제14조제6항 관련)</b>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 <p>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.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 <p>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.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- 마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중량제봉투</b> ( 리터 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( ) 용 - ( 지역용 )</p> <p>*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안 게재하고,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 항 시 장</p> <p>문의사항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</p> <p>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재사용중량제봉투</b> ( 20ℓ )</p> <p>상품을 담은 후 중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</p> <p>재사용중량제 봉투 마크</p> <p>시-마크 /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</p> <p>*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안 게재하고,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 항 시 장</p> <p>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"> <p>1. 봉투용량 표시는 중량제봉투 5리터, 10리터, 20리터, 50리터, 100리터로 각각 표시 한다.</p> <p>2.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표시한다.</p> <p>3. 일반용봉투는 등지역용과 읍면지역용으로 각각 표시한다</p> <p>4. 봉투 묶는 부분 표시는 굵은 실선 으로 표시한다</p> </div>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〈신 설〉</p>	<p><b>【별지 제14호 서식】</b>  <b>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신청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명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광고주와의 관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소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책 또는 직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 년 월 일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락 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광고 사업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회 사 명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자(광고주)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재 지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락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 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ℓ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ℓ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ℓ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※ 별지작성 가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padding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장 귀하</p> </td> </tr> </table>	신청인	성 명		광고주와의 관계		주 소		직책 또는 직위		생 년 월 일		연 락 처		광고 사업장	회 사 명				대표자(광고주)				소 재 지		연락처		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		용 량	10ℓ	20ℓ	50ℓ			수 량	매	매	매	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						※ 별지작성 가능			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장 귀하</p>					
신청인	성 명			광고주와의 관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	직책 또는 직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 년 월 일		연 락 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광고 사업장	회 사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표자(광고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재 지		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		용 량	10ℓ	20ℓ	50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 량	매	매	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별지작성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시장 귀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1-28호

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149-4번지 외 3필지(지방하천 : 장기천)내에 공사용 및 상수도관로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 
포 항 시 장 (인)

2011. 4. 7

□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하천명	점용위치		점용목적	점용면적(㎡)		점용기간		점용자	비고
	읍면동	지번		일시	영구	일시	영구		
장기천 (지방하천)	장기면 신창리	149-4번지 외 3필지	공사용 일시점용	399.49		2011.04.07 ~ 2011.12.31		포항시장 (상수도사업소)	
장기천 (지방하천)	장기면 신창리	149-4번지 외 3필지	상수도관로 매설		30.31		허가일 로부터 영구	포항시장 (상수도사업소)	



**공 고**

포항시 공고 제2011 - 365호

**공 시 송 달 공 고**

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대부업법”이라 한다.)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**포 항 시 장 박 승 호**

2011년 4월 8일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
2. 공 고 기 간 : 2011. 4. 12. ~ 5. 11

3. 송달 대상자 : 붙임(2개 업체)

**4. 송 달 내 용**

- 해당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, 향

후 5년간 대부업 등의 등록이 제한됩니다.

※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경제노동과(054-270-24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공고 제 2011 - 369 호

**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**

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 (150만원이하의 범칙금)되며,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**포 항 시 장 박 승 호**

2011. 04. 08.

- 1. 공 고 기 간 : 2011. 04. 11. ~ 2011. 04. 30. (20일간)
- 2. 폐 차 장 소 : 신진폐차장, 포항종합폐차장, 동해지구종합폐차장,  
(주)태경ENG폐차장, 흥해종합폐차장, 태평양종합폐차장(주)  
대원종합폐차장
- 3. 폐차 예정일 : 2010. 05. 02. 이후
- 4. 문 의 처 :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☎(054)270-3643
- 5. 공시송달은 공고로 같음합니다.
- 6. 강제처리대상차량 : 07너4848호 외 14대 (붙임 내역 참조)

포항시 복구청 공고 제 2011 - 150호

**도로지정 공고**

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 복구청장

2011. 4. 12

1. 건명 : 도로의 지정

2. 도로의 위치지정내용

대지위치	도로지번	지정면적(㎡)	도로길이(m)	도로너비(m) (평균값)	지정일자	비고
포항시 북구 죽도동 668-9번지	668-9번지	12.8	25.6	05	2011.4.12	

3. 도면 :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

문의처 : 건축과(054-240-7473)